

준 공 계

(공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1. 공 사 명 :
2. 시행 부서 : (주)귀뚜라미에너지
3. 굴착 업체 :
4. 시공관리자 :
5. 복구 업체 :
6. 착 공 일 :
7. 준 공 일 :
8. 준공 내용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m ²)	비고
계					
아스팔트 도로(A)					
콘트리트 도로(C)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로(CA)					
보 도					
경계블럭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도시가스 공사

공사 전	모래부설
모래부설 후 스탬프(깊이측정)	보호포 매설
다짐	폐기물 처리
폐기물,잔토 상차	골재부설

다짐	다짐 후 깊이 측정
유제	중층
포장완료	아스콘 온도측정
안내간판 및 신호수	

준 공 계

1. 공 사 명 : 시흥동 837-18호 도시가스 철거공사
2. 시행 부서 : ㈜귀뚜라미에너지
3. 굴착 업체 : ㈜정은***
4. 시공관리자 : 김** 010-****-****
5. 복구 업체 : **건설
6. 착 공 일 : 2017. 09. 25.
7. 준 공 일 : 2017. 10. 04.
8. 준공 내용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m ²)	비고
계	시흥동 837-18호	1.2	1.2	1.4	
아스팔트 도로(A)					
콘트리트 도로(C)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로(CA)	시흥동 837-18호	1.2	1.2	1.4	
보 도					
경계블럭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도시가스 공사



공사 전



모래부설



모래부설 후 스탬프(깊이측정)



보호포 매설



다짐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잔토 상차



골재부설



다짐



다짐 후 깊이 측정



유제



중층



포장완료



아스콘 온도측정



공사 안내간판 및 신호수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조건

0.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 16조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 관로 굴착 시에는 공사구간 전면에 안전펜스를 필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펜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 시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능 인력을 활용하고,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평탄성 확보, 줄눈폭 유지, 단부 및 맨홀·가로등주 등 시설물 정밀 마감, 1/2이하 조각블록 사용 금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등 내구성이 있고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 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도로굴착 이후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 면으로부터 0.5m입니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써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부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 후 3일 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정

나. 부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 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 토·자재 방치로 통행 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11. 도로불법굴착(도로점용허가 미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예정입니다.

12. 지하매설물을 매설 할 경우 추후 도로관리청에서 지하매설물 이설 요청이 있을 시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 매설하여야 합니다.

13. 도로 복구시 준수사항

가. 모래환토(소규모 수탁공사 포함) 시행

나. 이면도로 당일복구 불가시 전면 모래환토 및 부직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물청소 실시

다. 지하매설물 설치 후 되메우기시 층 다짐 및 물다짐 시행

14. 도로굴착 착공신고는 착공 5일 전까지 제출할 것(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허가승인 취소됨)